

해외출장(도쿄) 요약

부서 : 환경안전연구실

과제코드 : 2022-ER-15

과제명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연구책임 및 자료제공 : 황인창, 백종락, 이현정

작성일 : 2022년 12월 16일

게시요망일 : 2022년 12월 22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도쿄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제도 조사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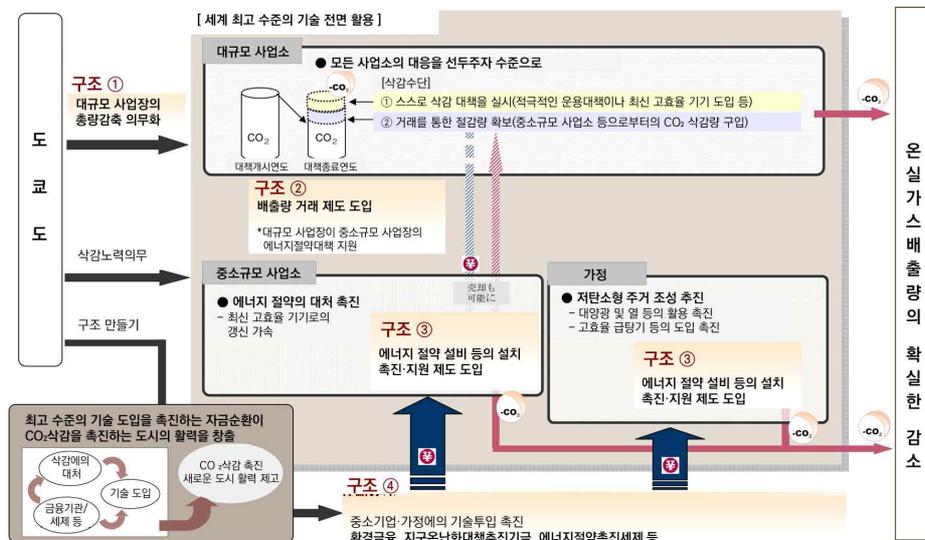
- 출장국: 도쿄(일본)
- 출장기간: 2022년 11월 15일(화) ~ 2022년 11월 18일(금) / 3박 4일
- 출장 목적
 - 수탁과제로 수행 중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해외 도시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세계 최초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Cap&Trade제도(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를 실시한 일본 도쿄도를 방문하여 지자체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 및 과정, 현재까지 주요 성과 및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담당자 면담 조사를 실시, 서울시에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제도의 이해관계자(대상 및 관련 기관),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 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 모델 개발 및 세부 시행 지침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일 정	활동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1.15. (화)	서울→도쿄	-	[이동] 서울(인천)→도쿄(나리타)
	도쿄		[연구진 회의] 기관 방문 조사 및 면담 조사 준비
11.16. (수)	도쿄	도쿄대학	[기관 방문] 도쿄대학 시설과 담당자 면담 조사
		와세다대학	[전문가 면담] Ken-Ichi AKAO 교수(와세다대학), 이수철 교수(메이조대학)
11.17. (목)	도쿄	도쿄도청	[기관 방문] 도쿄도 총량삭감과 담당자 면담 조사
		와세다대학	[전문가 면담] Toshi H. ARIMURA 교수(와세다대학)
11.18. (금)	도쿄→서울	E&E Planning	[기관 방문]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 조사
		서울 도착	[이동] 도쿄(하네다)→서울(김포)

2) 출장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도쿄의 기후변화 대응

- 도쿄는 일본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업무나 주거용 건물이 집적해 있으며, 세계적인 비즈니스 거점이며 많은 도민(시민)들의 생활 기반을 담당하고 있음
- 도쿄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대처가 중요하다 판단, 2006년 12월 「10년 후의 도쿄」에서 2020년까지 도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 이를 실현하고자, 도내 「카본 마이너스 도시 만들기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07년 6월, 10년 프로젝트의 기본방침으로 「도쿄도 기후변화 대책방침」 발표
 - 이해관계자 미팅 개최 등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제휴, 협정, 조례화 등을 통해 시책을 마련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가정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유도



[그림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체계 구상

(자료: 도쿄도 환경국, 보도자료(2007.6.1.))

- 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옴
- ①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前 제도)
 - 도쿄도는 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목표설정 등을 요구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도입(2002년 4월)
- ② 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
 - 도쿄도는 2008년 6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환경확보조례)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의 건물 대상 도시형 Cap&Trade 제도를 시행함.
 - 유럽의 EU-ETS, 미국 동부 RGGI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쿄도에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실행함

- ➡ 대규모 사업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지만,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가 계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총량 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는 실질적인 감축 결과를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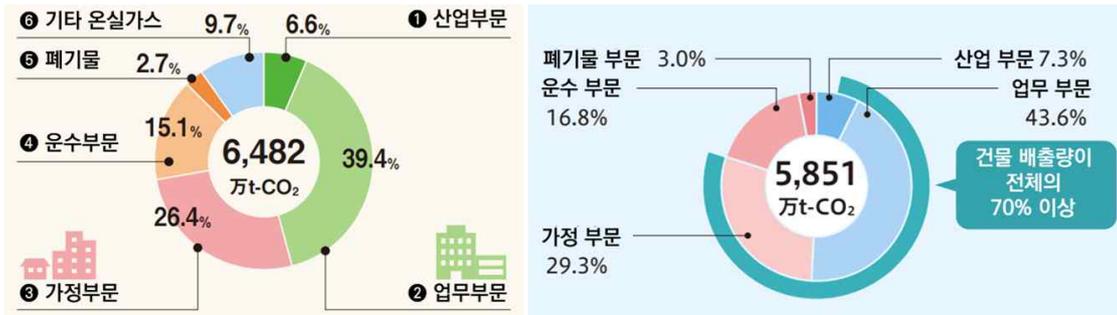
[표 1] 도쿄도 기후변화 대책 중 건물 대상 제도 추진 경과 (자료: 도쿄도 환경국)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대책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 도입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2월 환경확보조례 공포 (공해방지조례 전면개정) ✓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서 제도' 창설 □ 2002년 4월 계획서 제도(제1차) 시행 □ 2005년 3월 환경확보조례 개정 ✓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서 제도' 강화 □ 2005년 4월 계획서 제도(제2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6월 기후변화대책방침 책정 ✓ '대규모 사업소 총량 감축 의무화' 제기 □ 2007년 5월 ~ 08년 3월 환경심의회 심의 □ 2007년 7월 ~ 2008년 1월 이해관계자 미팅 ✓ 제도 개정 논의 진행 □ 2008년 6월 환경확보조례 개정안 가결 □ 2009년 4월 개정 조례·규칙 시행 □ 2010년 4월 총량 감축 의무 개시

(2) 도쿄도 「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

○ 배경 및 목적

- 도쿄도 내 CO₂ 배출량의 70% 이상이 건물로부터의 배출이며, 업무·산업 부문의 배출이 약 50%를 차지함. 또한 에너지 소비량도 건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도쿄도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별 구성비 및 건물의 비율(2017년 기준)

(자료: Zero Emission Tokyo, 도쿄도(2019))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소(업무·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삭감 의무량을 설정하여 총 배출량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함

○ 제도의 대상

-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전체 사업소 중 0.2%이면서 업무·산업 부문의 CO₂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소(약 1,2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 환경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 제도」에서 대상 사업자 및 지정 관리 공장의 요건을 근거로, 에너지 사용량 1,500kL 이상을 기준으로 대상 유형을 지정/특정/지정상당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소로 구분함

- 유형에 따라 보고 대상 및 내용, 의무가 다르며 '감축 의무' 부과대상은 특정 지구온난화 대책사업소에만 해당됨
- 또 대규모 사업소라도,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설비 갱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상당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소'로 분류하여, 배출량 보고 및 계획서는 제출받되, '감축 의무' 대상은 아님

[표 2] 대상 사업소의 구분 (자료: 도쿄도 환경국)

구분	요건
지정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소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합계 1,500kL 이상인 사업소
특정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소	3개 연도 연속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합계 1,500kL 이상인 사업소
지정상당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소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연간 합계 1,500kL 이상인 사업소로서, 중소기업 등이 1/2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업소

※ 사업소란 기본적으로 건물, 시설 단위(주거용 제외)

-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은 전기, 가스, 열(지역 난방)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총량제와 유사함
 -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여 제도의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시트(엑셀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물 사용 및 하수의 배출 또한 보고 대상임

[표 3] 대상 온실가스 (자료: 도쿄도 환경국)

(1) 특정 온실가스	에너지 기원 CO ₂	보고 대상	감축 의무 있음
(2) 기타가스	① 비에너지기원 CO ₂		감축 의무 없음
	② CO ₂ 이외의 가스 (CH ₄ , N ₂ O, HFC, PFC, SF ₆ , NF ₃)		
	③ 물 사용, 하수 배출		

※ 기타 가스 감축량은 감축 의무에는 이용가능(거래는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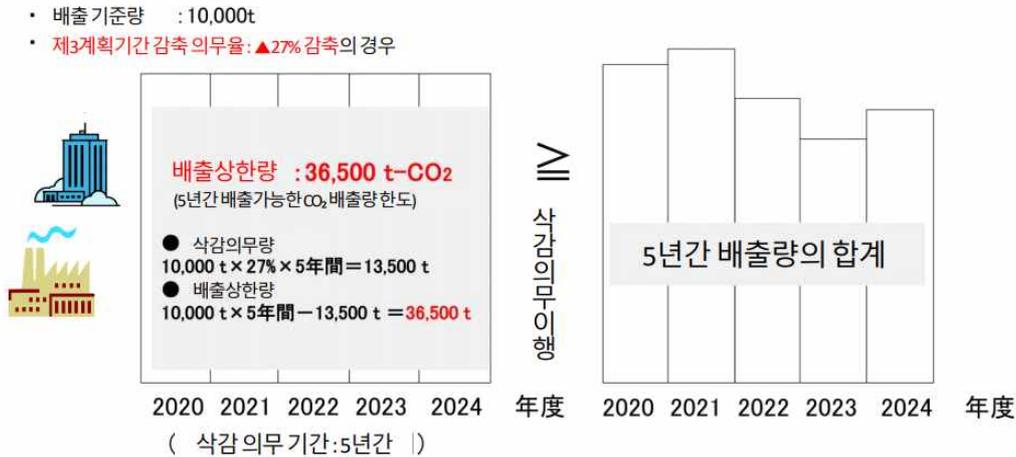
○ 의무 이행 기간 : 5년간

- 2010년도부터 5년마다,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지정
 - 제1계획기간 : 2010년~2015년, 대폭 삭감을 위한 전환 시동기
 - 제2계획기간 : 2015년~2020년, 대폭 삭감의 정착, 전개기
 - 제3계획기간 : 2020년~2025년,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절약 지속과 촉진
 - 제4계획기간 : 2025년~2030년,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절약 지속과 정착
- 5년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계절적 요인 또는 코로나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연도가 있더라도 기간 전체로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할당 방식

- 제도 도입 초기, 동일한 감축 의무율을 적용(Grand fathering)하여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의무량 및 배출 상한량을 산정하였으나, 현재 그랜드 파더링과 벤치마크 2개의 방식 모두 활용함

- 건축물 성능 향상으로 제도의 대상이 된 시점에서 이미 에너지 절약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소가 나올 것으로 추측, 신규 사업소에 대해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15개 용도별로 설정하였으며, 2009년 이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하여 최신 기술 적용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단 벤치마크 방식을 기준배출량 산출에 이용할 경우 용도 구분별 배출 표준 원단위에 데이터센터나 식당 등의 용도도 구분하여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도 고려함



[그림 3] 삭감의무량 및 배출상한량 산정 예시

(자료: 도쿄도 환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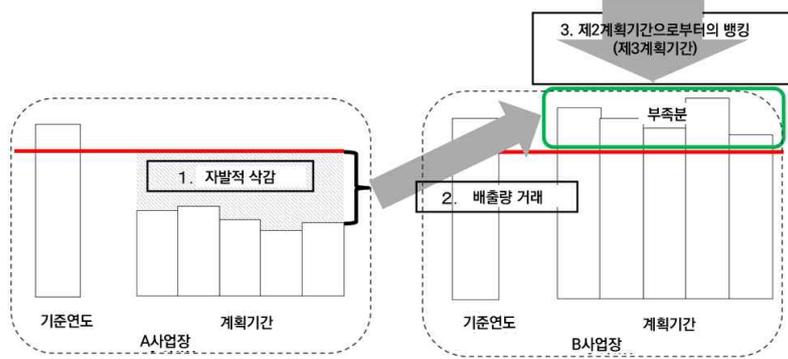
○ 의무 대상(자)

- 대상 사업소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함(소유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전원이 의무 대상자가 됨)
- 배출 총량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시 설비 갱신 등과 운용 대책 마련 모두 중요하므로,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건물의 소유자를 의무 대상자로 함
- 소유자 이외에도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제도의 의무자로 신고함으로써, 소유자를 대신해 또는 소유자와 함께 제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단,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협의 필요)
- 형식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권한자가 제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건물 등에 대해서 소유자와 이용자 모두 제도 의무 이행에 참여하도록 함

○ 의무 이행 수단

- 의무 이행 수단은 크게 사업소 자체적 감축, 배출량 거래, 전 계획기간으로부터의 बैं킹 세 가지로 구상하였으며, 사업소 자체적 감축에는 고효율 에너지 소비 설비·기기의 교체, 운용 대책(행태 개선 등)의 추진 등이 포함됨
- 배출량 거래는 총량 감축 의무 이행 수단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로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 기간 내에 삭감하지 못한 부분을 크레딧으로 총당하여 감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 초과 감축량에 대해서는 크레딧화하여 부족한 사업소와 상대적으로(가격을 자유롭게 정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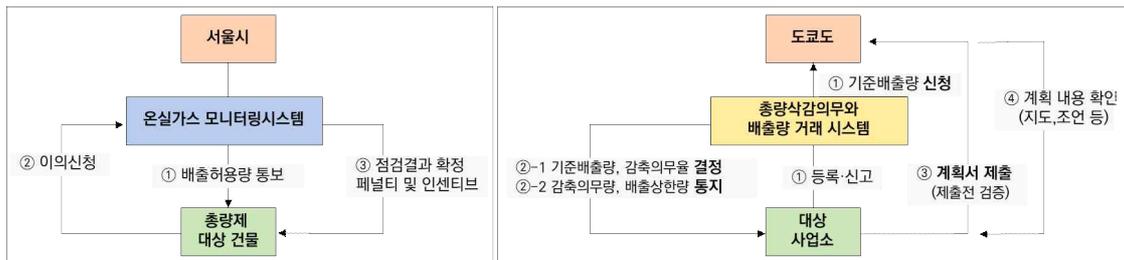
- 크레딧은 본 제도의 감축의무 이행에만 이용가능하였으나, 각 사업소의 자체 감축 노력이 지속되어 이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크레딧이 사용되지 않은 채 사용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크레딧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화 시스템을 도입함
- 무효화란 삭감량 계좌부(뱅킹)에 기록하여 본 제도의 의무 충당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제도 의무 이행 외 일본 환경성의 '탄소오프셋 제도'에도 활용 가능함



[그림 4] 삭감 의무의 이행 수단
(자료: 도쿄도 환경국)

○ 이행 절차

- 도쿄에서는 크레딧의 등록, 이전, 의무충당 등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 사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관리 시스템이 아닌 기록 시스템으로 대상 사업소에서 등록·제출하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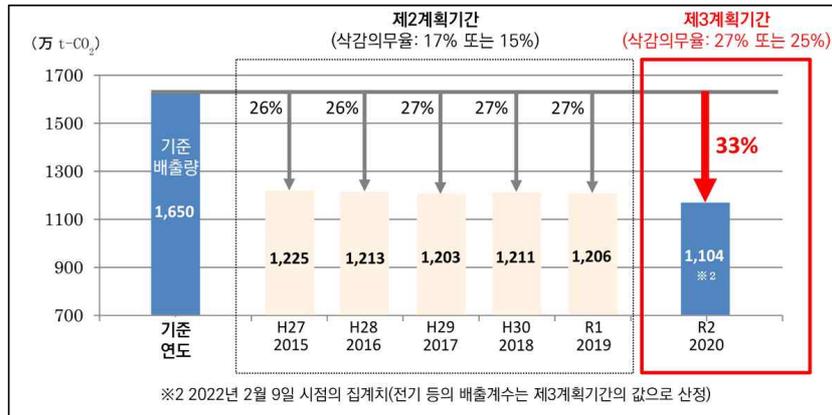


[그림 5] 제도 운영 체계 비교

(자료: 서울시(2021), 서울시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방안 학술용역, 도쿄도 환경국 제도의 흐름 참조)

○ 성과 및 목표

- 기준배출량(1650만t)에 대해 2019년도 27% 감축, 2020년도는 33% 감축함
- 도쿄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고효율기기·LED 조명 등으로 교체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함께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원격 근무의 증가 등이 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환기 대책 강화, 통신 인프라 수요 상승 등으로 추정
- 도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제로 에미션 도쿄 2020 Update&Report, 2019): 온실가스 배출량(2000년 대비) 30% 감축 → 50% 감축
- 도쿄도의 중장기 목표와 정합성, 사업소의 여건 및 동향, 현재까지 제도의 실적, 국내외 정세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중임



[그림 6] 대상사업소의 총 CO₂ 배출량 추이
(자료: 도쿄도 환경국(2022.3.3.))

(3) 기관방문 및 담당자 면담 내용

① 도쿄도청	
일시 및 장소	2022. 11. 17. (목), 도쿄도제2청사 회의실
면담 대상자	도쿄도 총량삭감과장 타카시 오타니 외 2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는 일본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중앙 정부에 앞서,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음. 특히 고층 및 대형 건물이 밀집된 도시의 특성에 근거한 제도의 필요성과 도쿄 내 CO₂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소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음 - 감축 목표 설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검토회」 및 「퍼블릭 코멘트」를 통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p>(※제도 추진 배경 및 과정, 성과 등 세부 내용은 위 조사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함)</p>
기관 방문 및 업무 수행 사진	
② 도쿄대학	
일시 및 장소	2022. 11. 16. (수), 도쿄대학 혼고캠퍼스 내 시설부 회의실
면담 대상자	도쿄대학 시설부 환경과장 나가노 후토시 외 5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대학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으로, 일본 각지에 다양한 교육·연구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도 국립대학 중 최대임 - 도쿄대학은 지속가능한 캠퍼스 실현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 캠퍼스 프로젝트(TSCP)를 시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 총량 삭감 의무 및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도쿄대학 시설부 환경과 TSCP팀에서 전담하고 있음 - 혼고(本郷, Hongo), 고마바(駒場, Komaba) I·II, 시로카네(白金, Shirokane) 총 네 개의

	<p>캠퍼스가 제도의 대상 사업소이며, 주로 TSCP의 환경부하 삭감을 위한 대처를 통해 감축의무를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대학 부속 병원 등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건물의 설비 교체 등이 배출량 감축에 큰 기여. 최근 '도쿄대학 ZEB 설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교적 설치 비용이 낮은 옥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사업 신청에도 한계가 있음 - 제3계획기간까지의 의무 이행은 가능하지만, 제4계획기간에는 감축의무율이 27%에서 46%로 증가, 또 도쿄도에서 현재 카본하프(50%)를 추진하고 있어 이후 감축 수단에 대한 고민 (현 시점에서 35%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역할 및 기대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총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가 탄소 중립 등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높으며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p>기관 방문 및 업무 수행 사진</p>	
<p>③ E&E Planning</p>	
<p>일시 및 장소</p>	<p>2022. 11. 18. (금), E&E Planning 회의실</p>
<p>면담 대상자</p>	<p>E&E Planning 대표이사 다나카 스키 외 3인</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의 지구 온난화 대책 관계법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검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며(2020년 기준 총 33건), 도에서 등록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제도에서 최고등급(S)을 받음 - 검증과 컨설팅 업무 외에도 쿨넷 도쿄에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강연(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로 설비 교체 등 물리적 개선을 통한 감축이 주였다면, 현재는 운영 개선을 통한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고효율 설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선호하여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소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개선을 통한 감축을 선호하는 편임 - 분석과 진단을 통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감축 효과도 크며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의뢰사의 만족도도 높은 편임 - 실무적 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임. - 감축 목표율 상향에 따라,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예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진단 및 컨설팅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함
<p>기관 방문 및 업무 수행 사진</p>	

④ 학계 전문가	
일시 및 장소	2022. 11. 16. (수), 와세다대학 아카오교수 연구실
면담 대상자	와세다대학 켄이치 아카오 교수, 메이쵸대학 이수철 교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아직 전국 규모의 배출권 제도가 없으나, 일본경제신문(10월 26일자)에서 경제산업성이 2026년에 전국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보도함 - 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상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kL이상 사업자(전국 12,150 사업자(15,040사업소))에 대해 온실가스 산정 보고 및 공표 의무가 있으나, 도쿄도의 제도와 배치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에서 도쿄도의 독자적 제도를 존중해줌 -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인 중심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캡(cap)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일시 및 장소	2022. 11. 17. (목), 와세다대학 회의실
면담 대상자	와세다대학 토시 아리무라 교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효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긴 하나, 제1계획기간과 비교해 제2계획기간에 대한 분석한 결과,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 지진 등으로 인한 절전 의식의 영향이 큼) - 투기 세력에 대한 우려, 제도적 보완 장치의 미비, 장인 정신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국가의 ETS가 의무화 되더라도 대상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2030년까지 도쿄도에서는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업무 수행 사진	

(4) 시사점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쿄도의 제도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면담 조사한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의무 대상자의 경우, 업무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부담이 존재하며 의무 감축률 상향 시, 대응 방법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음
-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나 대상 사업소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 등 실제 성과를 보임
- 서울시도 현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추진, 전문가 포럼,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도쿄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환경안전연구실 황인창 연구위원(2149-1096),
백종락 연구원(1436), 이현정 연구원 (1205)